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5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준하여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청가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의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회의록 공개,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,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규정과 의장·부의장 선거, 의장 등의 겸직 제한,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,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,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·정비하여 의회운영의 명확성·체계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- 나. 의원의 청가 중 출산휴가 규정 신설(안 제7조제3항, 제4항)
- 다. 의장·부의장 선거 규정 정비(안 제8조제3항)
- 라. 의장 등의 겸직제한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마.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- 바.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- 사. 회의의 비공개 규정 신설(안 제41조의2)
- 아. 회의록·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(안 제45조의2, 제45조의3)
- 자.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신설(안 제79조의2)
- 차.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사항 규정(안 제81조의2)
- 카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5. 13. ~ 5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규칙안 : 붙임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내부규율**”을 “**내부 규율**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**한다**)은 **임기초에**”를 “**한다**) **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**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**의석배정**)”을 “(**의석 배정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“**때에는 의장이**”를 “**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총선거**”를 “「**공직선거법**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(이하 “**전국동시지방선거**”라 한다)”로, “**지역선거구 등**”을 “**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**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최초 집회)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담양군의회(이하 “**의회**”라 한다)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 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「**지방자치법**」 (이하 “**법**”이라 한다)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.

제4조 본문 중 “**담양군의회**(이하 “**의회**”라 한다)”를 “**의회**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**총선거**”를 “**전국동시지방선거**”로, “**임시회에 있어서**”를 “**임시회**”로 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**임기초**”를 “**임기 초**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**주민의 권익신장**”을 “**담양군민의 권익 신장**”으로, “**주민앞**”을 “**담양군민 앞**”으로

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것은 의장**”을 “**것과 출산휴가는 의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**때에는 다시**”를 “**때는 다시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**이유없**”을 “**이유 없**”으로, “**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**”를 “**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**”로, “**해당의원**”을 “**해당 의원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1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) 이내에 있어야 하며, 3회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)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**”를 “**때는 2차 투표를 하**

고, 2차 투표”로, “**때에는 최다득표자**”를 “**때는 최다득표자**”로, “**2인이상 이면**”을 “**2인 이상이면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결선투표결**”을 “**결선투표 결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 최다선 의원을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그중**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의장 등의 겸직제한) ①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은 상호 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
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으로 당선 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중 “**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**”를 “**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,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 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

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**아니하고**”를 “**않고**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**집회후**”를 “**집회 후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날로**”를 “**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전단 중 “**개의시**”를 “**개의 시**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**개의시**”를 “**개의 시**”로, “**법 제72조 제1항**”을 “**법 제72조 제1항**”으로, “**때에는 유회를 선포할수**”를 “**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발언을 할**”을 “**발언할**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**휴회중이라도**”를 “**휴회 중이라도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전단 중 “**의사 일정**”을 “**의사일정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않을때에**”를 “**않을 때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)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 전단 중 “**본회의**”를 “**본회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**대하여는 토론을 하지**”를 “**관하여는 토론하지**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**의사일정의 미료안건**)”을 “(**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**)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대하여**”를 “**관하여**”로, “**못한**”을 “**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**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본문 중 “**때 회기시작일**”을 “**매회기 시작일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**회기중**”을 각각 “**회기 중**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**안될**”을 “**안 될**”로, “**있을때**”를 “**있을 때**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**때에는 의장**”을 “**때는 의장**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**대하여는 본회의**”를 “**관해서는 본회**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“**심사기간**”을 “**심사 기간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이유없이 그 기간내**”를 “**이유 없이 그 기간 내**”로, “**때에는 의장은**”을 “**때는 의장이**”로 한다.

제20조의4 단서 중 “**위원회에**”를 “**위원회 또는 본회의에**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**찬성없**”을 “**찬성 없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**”를 “**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**”로 한다.

제24조 본문 중 “**때의찬성자 3분의 2이상**”을 “**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단서 중 “**대하여는 제안자**”를 “**대해서는 제안자**”로, “**대하여는 의결**”을 “**대해서는 의결**”로, “**그 중**”을 “**그중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공무원으로 하여금**”을 “**공무원에게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인정할**”을 “**인정할**”로 한다.

제25조의2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**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**”를 “**정리가 필요할 때**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발언통지”를 “발언 통지”로, “통지를 한”을 “통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처리 할”을 “처리할”로, “그외”를 “그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발언통지”를 “발언 통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등단하여”를 “등단하여야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의제외 발언의 금지)”를 “(의제 외 발언의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발언회수의 제한)”을 “(발언 횟수의 제한)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발언시간의 제한)”을 “(발언 시간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발언시간”을 “발언 시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“게재 할”을 “게재할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인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, 청원 및 주요 군정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3조의2제1항 단서 중 “의견표명”을 “의견 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일전”을 “1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다만,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 하거”를 “다만,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”로, “내지”를 “또는”으로, “회의의질서를 위반할 때에”를 “회의의 질서를 위

반할 때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**올린안건에 대하여**”를 “**올린 안건에 관하여**”로, “**미리 반대**”를 “**미리 반대**”로, “**통지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통지하여야 한다**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**참가 할때에**”를 “**참가할 때**”로, “**돌아 갈**”을 “**돌아갈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**2인 이상**”을 “**2인 이상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토론을 하지**”를 “**토론하지**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39조 본문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수없다**”를 “**수 없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**참가할수**”를 “**참가할 수**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**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**”을 “**때는 의장이 의원에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본회의**”를 “**본회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**때에는 가결되 있음**”을 “**때는 가결되었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회의의 비공개)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 의장은 의원중”을 “때는 의장은 의원 중”으로, “위원의참석하”를 “위원의 참석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때에는”을 각각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 제목 “(수정안의 표결순서)”를 “(수정안의 표결 순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수정안 보다”를 “수정안보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44조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재한다”를 “기재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개의 · 회의중지 · 산회”를 “개의 · 회의 중지 · 산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출석공무원”을 “출석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서면질문”을 “서면 질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언내용”을 “발언 내용”으로 한다.

7. 제반 보고 사항

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(정례회는 30일)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제45조의3(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)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제46조제1항 단서 중 “회기동안”을 “회기 동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존연한”을 “보존 연한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**의하여**”를 “**따라**”로,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한 의장**”을 “**한, 의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,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**아니 된다**”를 각각 “**아니 된다**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**소멸 되었다고**”를 “**소멸했다고**”로 한다.

제50조의 제목 “(**본회의중 의원회 개회**)”를 “(**본회의 중 의원회 개회**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**본회의의**”를 “**본회의**”로 한다.

제51조 중 “**1인이상**”을 “**1인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본문 중 “**거쳐표결한다**”를 “**거쳐 표결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부득이한경우에는**”을 “**부득이한 경우에는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인정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**”를 “**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관계공무원**”을 “**관계 공무원**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본문 중 “**동일의제**”를 “**동일 의제**”로, “**시간등에 제한없**”을 “**시간 등에 제한 없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아니 한다**”를 “**아니한다**”로 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**3분의1이상**”을 “**3분의 1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55조의2제1항 전단 중 “**수있다**”를 “**수 있다**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**전문지식을 요하는**”을 “**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**”으로, “**있는자 등(이하 “진술인”이라한다)**”을 “**있는 사람 등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열때에**”를 “**열 때**”로, “**참고 사항을기제한**”을 “**참고사항을 기재한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아니**”

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수있다”를 “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, 여비 지급 기준은 「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”를 “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, 그 밖에”로, “보고 하여야”를 “보고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재하여야”를 “적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기 전”을 “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”를 “긴급할 때에는 배부”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“다른위원”을 “다른 위원”으로, “하게할”을 “하게 할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“개의·회의중지”를 “개의·회의 중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표결 수

제60조의 제목 “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”를 “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회의록”을 “회의록이나”로, “열람의”를 “열람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,”로, “없는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제안설명”을 “시정연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“예결위원회”)”를 “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

위원회”로, “**끝난후**”를 “**끝난 후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때에는 심사 기간**”을 “**때는 심사기간**”으로, “**이유없이 그 기간내**”를 “**이유 없이 그 기간 내**”로 한다.

제62조 중 “**재적의원3분의 1이상**”을 “**재적의원 3분의 1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**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**”을 “**있을 때는 예산의**”로 한다.

제64조 중 “**발견 된때**”를 “**발견된 때**”로, “**요구할수**”를 “**요구할 수**”로 한다.

제65조제2항 중 “**후그**”를 “**후, 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 한다.

제65조의2 중 “**결산심의**”를 “**결산 심의**”로 한다.

제66조의 제목 “(**군수등의 출석요구**)”를 “(**군수 등의 출석요구**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“**1이상**”을 “**1 이상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관계공무원**”을 “**관계 공무원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관계공무원은**”을 “**관계 공무원은**”으로, “**관계공무원의**”를 “**관계 공무원의**”로, “**관계공무원으로**”를 “**관계 공무원으로**”로 한다.

제66조의2제1항 중 “**회기중**”을 “**회기 중**”으로, “**특정분야**”를 “**특정 분야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**일괄질문·일괄답변**”을 “**일괄질문 · 일괄답변**”으로, “**보충질문**”을 “**보충 질문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**원할경우**”를 “**원할 경우**”로, “**보충질문**”을 “**보충 질문**”으로, “**범위안**”을 “**범위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질문내용이 질문의원간**”을 “**질문 내용이 질문 의원 간**”으로, “**사전**”을 “**사전에**”로, “**질문시간**”을 “**군정질문**”으로 한

다.

제67조의 제목 “(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)”을 “(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체없”을 “지체 없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10일이내”를 “1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기간내”를 “기간 내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68조의 제목 “(군수등의 발언)”을 “(군수 등의 발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, “할때”를 “할 때”로 한다.

제6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.

제69조제2항 단서 중 “폐회중”을 “폐회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기전”을 “있기 전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의원의자격심사”를 “의원의 자격심사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, “윤리특별위원회 (이하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(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일내”를 “기일 내”로 한다.

제71조제2항 단서 중 “기일내”를 “기일 내”로, “심사를 할”을 “심사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있는 때에”를 “있을 때”로 한다.

제72조제3항 중 “할수”를 “할 수”로 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급히필요한”을 “급히 필요한”으로, “요구 할”을 “요구 할”로 한다.

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

2호 중 “**방해 할**”을 “**방해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**자료 · 문서등의 인쇄물배포**”를 “**자료 ·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휴대반입**”을 “**휴대 반입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**행사등**”을 “**행사 등**”으로 한다.

제75조 중 “**의원 · 관계공무원**”을 “**의원, 관계 공무원,**”으로, “**필요한자와**”를 “**필요한 사람과**”로, “**자 외**”를 “**사람 외**”로 한다.

제77조제1항 중 “**구분 한다**”를 “**구분한다**”로 한다.

제78조의 제목 “**(방청권의 교부및 기재)**”를 “**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사무 과장**”을 “**사무과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때엔**”을 “**때,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교부 받**”을 “**교부받**”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**”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있는자**”를 “**있는 사람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관계직원**”을 “**관계 직원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때에는**”을 “**때는**”으로, “**자**”를 “**사람**”으로 한다.

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2(방청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제80조제4호 중 “**흡연행위**”를 “**흡연 행위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열독행위**”를 “**열독 행위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**녹음 · 녹화 · 촬영행**

위”를 “녹음·녹화·촬영 행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회의장내”를 “회의장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소란등”을 “소란 등”으로 한다. 제81조의 제목 “(녹음·녹화등)”을 “(녹음·녹화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장 또는위원장”을 “의장 또는 위원장”으로, “에서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”을 “에서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녹음등”을 “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”으로, “자는 매회기초”를 “사람은 매회기 초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위원회”를 “다만, 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장내”를 “회의장 내”로, “제한없”을 “제한 없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녹음등을 하는”을 “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을하는”으로 한다.

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의정활동 상황의 공개) ① 의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, 공개 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
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
3. 행정사무감사·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
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수 및 처리 현황
5. 의원별 회의 출석률, 의원발의, 군정질문 현황
6.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

제82조제1항 중 “징계대상의원”을 “징계대상 의원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회부 한다”를 각각 “회부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,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법 제95조에 따라”로, “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”를 “때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과”를 “제1항,”으로, “경우에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3조의 제목 “(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”을 “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제82조 제1항과”를 “제82조제1항,”으로, “알게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, “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”을 “받은 날 또는 제82조제3항”으로, “휴회기간”을 “휴회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”을 “제8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82조 제2항”을 “제82조제2항”으로, “동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”을 “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으로, “날,징계대상자”를 “날, 징계대상자”로, “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”를 “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폐회기간중”을 “폐회 기간중”으로, “의회의집회일”을 “의회의 집회일”로 한다.

제85조제2항 중 “변명을 하게”를 “변명하게”로 한다.

제86조제1항 중 “지체없”을 “지체 없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<u>내부규율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내부 규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등록) 담양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(등록) ----- ----- <u>한다</u>)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----- -----.
제3조(의석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담양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<u>의장이</u> 이를 정한다.	제3조(의석 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<u>총선거</u>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<u>지역선거구</u> 등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----- <u>때는 의장이</u> <u>잠정적으로</u> --.
	② 「공직선거법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(이하 “ <u>전국동시지방선거</u> ”라 한다) -- -- <u>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</u> ---.
<신 설>	제3조의2(최초 집회)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

회”라 한다)의 최초 집회는 천
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
는 한 의원 임기 개시일에 소집
하도록 「지방자치법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 제54조제1항에
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
수 있다.

제4조(개회식) 담양군의회(이하
“의회”라 한다)는 집회일에 개
회식을 행한다. 다만, 총선거 후
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
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
을 행하고 기타 임시회에서는
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의
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
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
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
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
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
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
다.”

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의원이 사
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
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
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

제4조(개회식) 의회-----

----- 전국동시지
방선거 -----
----- 임시회-----

-----.

제5조(선서) ----- 임기 초-----

----- 담양군민의
권익 신장-----

-- 담양군민 앞-----

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-----

--- 때는 -----

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,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② -----
것과 출산휴가는 의장-----

-----.

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1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) 이내에 있어야 하며, 3회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)에

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
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
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
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
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
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④ (생략)

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
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
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
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
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
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
로 할 수 있다.
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
(생략)

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
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
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
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
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다
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다득
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

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
다.

⑤ -----

때는 다시 -----

-----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⑦ ----- 이유 없-----
----- 2
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-----
----- 해당 의원-----
-----.

⑧ -----
----- 때는 -----
-----.
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때는
2차 투표를 하고, 2차 투표-----
----- 때는 최
다득표자-----

----- 2인 이상이면 -----

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

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--.

③ ----- 결선투표결-----
----- 때는 최다선 의원을,
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
에는 그중 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의장 등의 겸직제한) ①

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은
상호 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
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
이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
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
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
본다.
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-
----- 선거일보
다 먼저인 경우, -----

----.

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
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.
제11조(의장·부의장의 사임) ① (생략)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<u>아니하고</u> 표결한다.	제11조(의장·부의장의 사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않고</u> -----.
제12조(회기) ① (생략) ② 의회의 회기는 <u>집회후</u>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. ③ 회기는 집회한 <u>날로부터</u> 기산한다.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<u>때에는</u>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	제12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집회 후</u> ----- -----. ③ ----- <u>날</u>----- -----. ④ ----- ----- <u>때는</u> ----- -----.
제13조(개회) 본회의는 본회의 의	제13조(개회) -----

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·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

제15조(휴회) ① (생략)

② 휴회중이라도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.
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의장은 개의일시·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.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

----- 개의 시-----
---. -----
--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개의 시-----
----- 법 제72조제1항-----
----- 때는 유
회를 선포할 수 ---.

③ -----

----- 발언
할 -----.

제15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휴회 중이라도 -----

----- 때
는 -----.
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---

----- 의사일정-----
-----.

아니한다.

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
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
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
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
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
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
수 있다.

<신 설>

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재적의
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
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
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
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
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
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

-----.

② -----

----- 않을 때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때는 -----

-----.

제16조의2(연간 의회운영의 기본
일정 수립) 의장은 매년 12월 3
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
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
야 한다.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
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
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
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-----

----- 본회 -----

----- 때는 -----

-----.

하며,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
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제18조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 의
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
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에
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
(생 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
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
회기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
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
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
여 제출한다.

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
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
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
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
할 때

3.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
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
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
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

----- 관하여는 토론
하지 -----.

제18조(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)

관하여 ----- 못하였거나
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-----
-----.
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매
회기 시작일 -----
-----.
-----.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회
기 중-----

3. -----
----- 회기
중----- 안 될
----- 있을 때

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제20조의2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제20조의3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20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

제20조(의안의 회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때는 의장-----
-----.

제20조의2(특별위원회 회부) ① -----
----- 관
해서는 본회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3(심사기간) ① -----
심사 기간-----
-----.

② ----- 이유
없이 그 기간 내-----
----- 때는 의장이 -----

---.

제20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--

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다
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
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
회부할 수 있다.

제22조(수정동의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
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전
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
수 없다.

④ (생략)

제24조(변안) 변안동의는 본회의
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
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
분의 2이상의 동의로, 위원회에
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
다. 그러나, 본회의에 있어서는
안전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
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
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
에는 변안할 수 없다.

제25조(안전심의) ① 본회의의 안
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
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

-----.

----- 위원회 또
는 본회의에 -----
-----.

제22조(수정동의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--- 찬성 없-----.

③ ----- 소관 사항 외의 안
건에 대해서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변안) -----

----- 때의 찬성자 3
분의 2 이상-----

--. -----

-----.

제25조(안전심의) ① -----

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6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·문구·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

---. -----
----- 대해서는 제안자-----

--- 대해서는 의결-----
----- 그중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공무원에게-----

-----.

③ ----- 인정할 -----

-----.

제25조의2(재회부) -----

----- 때는 -----

-----.

제26조(의안의 정리) -----

정리가 필요할 때-----

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28조(발언의 허가) ① (생략)

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.

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며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

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.

제29조(발언의 장소)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1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

----.

제28조(발언의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발언 통지-----
--- 통지한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처리
할 -----
----- 그 외-----

--.

④ ----- 발언 통지-----

-----.

제29조(발언의 장소) ① -----
등단하여야 -----

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의제 외 발언의 금지) ①

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제32조(발언회수의 제한) (생략)

제33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인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,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

--- 아니 된다.

② -----

때는 -----

---.

제32조(발언 횟수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발언 시간의 제한) ① --
-- 발언 시간-----
-----.
-----.

② -----
----- 대해서---

----- 게재할 -----.

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인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,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

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,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1일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 하거나 타인을 비방 내지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다. [조 신설 2010.9.30.]

제35조(토론의 통지) ① 의사일정에 올린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

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의견 표명

② ----- 1일 전

③ ----- 다만,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----- 또는 -----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

제35조(토론의 통지) ① ----- 올린 안건에 관하여 ----- 미리 반대 ----- 통지하여

야한다.

② (생략)

제36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.

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.

제37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

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.

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.

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제38조(표결의 선포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-----
----- 참가할 때-----

----- 돌아갈 -----.

② -----
----- 때는 -----
-----.

제37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

① ----- 때는

--.

② -- 2인 이상-----

-----.
-----.

③ ----- 토론하지 ---
-----.

제38조(표결의 선포) ① -----
때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,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1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제39조(표결의 참가) ----- 때는 -----
----- 수 없다. -----

--- 참가할 수 ---.

제41조(표결방법) ① ----- 때는 의장이 의원에게 -----

-----.

② -----
--- 본회----- 때
는 -----
-----.

③ -----

--- 때는 가결되었음-----
-----.
-- 때는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1조의2(회의의 비공개)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

제42조(투표절차) ① 투표할 때에
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
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
투표함에 투입한다.

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
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
명하고 그 위원의참석하에 투·
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
다.

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
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
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
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
니한다.

④ (생략)

제43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동
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
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
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
를 정한다.

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
결한다.

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
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
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
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2조(투표절차) ① ----- 때는 -

-----.

② ----- 때는 의장은 의원 중

----- 위원의 참석하-----

--.

③ -----
--- 때는 -----.

----- 때는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수정안의 표결 순서) ① -

-----.

1. (생략)

2.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
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.

3.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
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
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

② (생략)

제44조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
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
선포한다.

제45조(회의록의 작성) ① 의회는
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
기재한다.

1. (생략)

2. 개의·회의중지·산회의 일
시

3.·4. (생략)

5.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

6. (생략)

7. 제반보고사항

8. ~ 11. (생략)

12. 서면질문과 답변서

13.·14. (생략)

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
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
록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수정안보다 -----.

3. -----
때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표결결과 선포) -----
--- 때는 -----
-----.

제45조(회의록의 작성) ① -----

기재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개의·회의 중지·산회-----
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5. 출석 공무원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7. 제반 보고 사항

8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서면 질문-----

13.·1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발언 내용 -----
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
회의록에는 의장·의장을 대리
한 부의장·임시 의장과 의회에
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
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.
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
안만 서명 날인한다.

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
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

제4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
정) ① (생 략)

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
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
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
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

제45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
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1
5일(정례회는 30일) 이내에 회
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
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
개한다.

제45조의3(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

개)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
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
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
공개한다.

제46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

-----.
----- 회기 동
안-----.

② -----
보존 연한-----.

제4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
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때는 -----

이를 결정한다.

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(생략)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
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
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
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
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
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
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
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
는 아니된다.

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
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
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
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
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
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
게재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50조(본회의중 의원회 개회) 위
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
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
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

-----.

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라

---- 때는 -----

--- 한, 의장-----

--- 아니 된다.

③ -----

-- 아니 된다.

④ -----

----- 아니 된다. ---

소멸했다고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본회의 중 의원회 개회) -

---- 본회의 -----

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1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52조(위원회의 심사)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(전문위원을 둔 경우)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·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

-----.

제51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-----

--- 1인 이상-----
-----.

제52조(위원회의 심사) ① -----

----- 거쳐 표결한다. -----

----- 부득이한 경우에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관계

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
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53조(위원의 발언) ① 위원은
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
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
언할 수 있다. 다만, 따로 발언
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
지 아니 한다.

② (생략)

제55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
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
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② (생략)

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
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
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
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·③ (생략)

제56조(공청회) ① 위원회는 중요
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
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
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
학식·경험이 있는자 등(이하

공무원-----
-----.

제53조(위원의 발언) ① -----
----- 동일 의제-----
----- 시간 등에 제한 없-----
-----.

-- 아니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위원회의 의사·의결정족
수) ① ----- 3분의
1 이상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 -----

----- 수 있
다.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공청회) ① -----
----- 전문적인 지식을
필요로 하는 -----

----- 있는 사람 등(이하

“진술인”이라한다)으로부터 의
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
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
·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
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
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
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
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
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
다.

④ (생략)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
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
의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. 이 경
우, 여비지급 기준은 「담양군
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
관한조례」 제9조의3제3항의 규
정을 준용한다.

제57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위
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
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
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
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

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② ----- 열 때--

----- 참고사항을 기재한

-----.

③ -----

----- 아니 된
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따라 -----

----- 수 있다. 이 경
우, 여비 지급 기준은 「담양군
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
관한 조례」 제9조의3제3항의
규정을 준용한다.

제57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--
----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
는 심사 경과 및 결과, 그 밖에

보고하여야 ---.

② -----

건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.

제58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.

1. 개의·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

2. ~ 7. (생략)

8. 표결수

9. ~ 11. (생략)

② 삭제

③ (생략)

제60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

----- 적어야 -----.

③ -----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-----
--. --- 긴급할 때에는 배부-----.

제58조(위원장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른 위원-----

-- 하게 할 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 -----

-----.

1. 개의·회의 중지-----
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표결 수

9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) -----
----- 회의록이나 -----
----- 열람 -----

을 때에는 심사·감사 또는 조
사에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용
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
는 대출하지 못한다.

제61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
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
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
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
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
원회는 예비심사를 하며 그 결
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
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
회(이하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
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
회의에 부의한다.

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
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
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
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
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
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
수 있다.

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
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
수정동의를 재적의원3분의 1이

-- 때, -----
----- 없으면 -----
----- . -----
-----.

제61조(예산안 심의) ① -----

----- 시정연설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예산결산특별위원회
(이하 “예결위원회”-----
----- 끝난 후 --
-----.

③ -----
----- 때는 심사기간-----

--- 이유 없이 그 기간 내---

-----.

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----

----- 재적의원 3분의 1 이

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63조(예산안의 의결)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4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된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수 있다.

제65조(결산의 심사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
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65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)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는 제61조와 제65조의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다.

상-----.

제63조(예산안의 의결) ① -----
----- 있을 때는 예산의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4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-----

----- 발견된 때-----

----- 요구할 수 ----.

제65조(결산의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후, 그 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때는 -----
-----.

제65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) -----

----- 결산 심의
-----.

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 본

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 하여야 하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

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군정 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

제6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 ①

---. -----
--- 1 이상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관계 공무원
-----.

③ -----
--- 때는 ----- 관계 공
무원은 -----

----- 관계
공무원의 -----

----- 관계
공무원으로 -----
-----.

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

----- 회기 중 -----
----- 특정 분
야-----
-----.

② ----- 일괄질문·일괄

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 의원이 원할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한다.

③ (생략)

④ 의장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미리 접수하여 질문내용이 질문의원간에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 후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67조(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) ①

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.

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.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

답변 ----- 보충 질문-----
----- . ----- 원할 경우 -----
---- 보충 질문-----
----- 범위-----
----- 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질문 내용이 질문 의원 간-----
----- 사전에 -----
----- 군정질문 -----

----- 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7조(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)

① -----

----- 지체 없이 -----
----- .

② -----
---- 10일 이내-----
----- . -- 기간 내-----
----- 때는 -----

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68조(군수등의 발언) 군수 또는
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
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
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
아야 한다.

제69조(사직) ① (생략)

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
표결한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
장의 이를 허가할 수 있다

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
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
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
있다.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9
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자격
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
구서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
원회 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
한다.)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
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
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
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8조(군수 등의 발언) -----
관계 공무원-----
----- 할 때-----

-----.

제69조(사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
이 표결한다. -- 폐회 중-----

③ -----

---- 있기 전-----
---.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-----
----- 의원의 자격
심사 ----- 때는 -----
----- 윤리특별위
원회(이하 -----

-----.
② -----
----- 기일

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
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
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
할 수 있다.

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

① (생략)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
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
만,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
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
심사를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
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
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.

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

· ② (생략)

③ 피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
로 변명하거나 또 다른 의원으
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73조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

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
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
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
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
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

내-----

-----.

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- 기일 내-----

심사할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있을 때-----

-----.

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할 수 --.

제73조(경호) ① -----

----- 급히 필요한 -----

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
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 할
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74조(회의의 질서유지) 의원은
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
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
여서는 아니된다.

1. (생 략)

2.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
해 할 목적으로 신문·잡지·
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
행위

3.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
자료·문서등의 인쇄물배포
및 녹음·녹화·촬영 행위

4. (생 략)

5.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
대반입

6.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
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

제75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회의
장 안에는 의원·관계공무원 기
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
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
없다.

----- 요구할 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4조(회의의 질서유지) -----

----- 아니 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방
해할 -----

--

3. -----
자료·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휴
대 반입

6. ----- 행사 등 -----

제75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----
----- 의원, 관계 공무원, --
----- 필요한 사람과 --
----- 사람 외-----
----.

제77조(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
의 종별)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
기자석으로 구분 한다.

② (생략)

제78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
방청권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
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
를 교부한다.

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
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
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
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
한다.

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
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
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
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
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
다.

④ (생략)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다음 각
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
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3. 삭제

4.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

제77조(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
의 종별) ① -----
----- 구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8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

사무과장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때, -

-----.

③ -----

----- 교부받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9조(방청의 제한) ① ---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
될 우려가 있는자

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
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
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
수 있다.

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
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
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
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
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
다.

<신 설>

제80조(방청인의 준수 사항) 방청
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
없다.

1. ~ 3. (생 략)
4.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
5.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
위
6.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·녹화

----- 있는 사람

② -----
----- 관계 직원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때는 -----
-- 사람-----
--.

제79조의2(방청 제한 고지) 방청
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
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
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
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제80조(방청인의 준수 사항) 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흡연 행위
5. ----- 열독 행
위
6. ----- 녹음·녹화

· 촬영 행위

7.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
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
박수를 치는 행위
8.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
방해하는 행위

제81조(녹음·녹화등) ① 회의를
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
제외하고는 의장 또는위원장은
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
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에
한 한다)에서 녹음·녹화·촬영
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
는 자는 매회기초에 신청서를
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
야 한다. 다만,위원회에 있어서
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
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
다.

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
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
녹음·녹화·촬영은 절차상 제
한없이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
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

· 촬영 행위

7. 회의장 내 -----

8. --- 소란 등 -----

제81조(녹음·녹화 등) ① -----

----- 의장 또는 위원장---

-----에서 녹음·녹화·촬
영 및 중계방송-----.

② ----- 녹음·녹화·촬영 및
중계방송-----
-- 사람은 매회기 초-----
-----. 다만, 위원회-----

--.

③ -----
----- 회의장 내-----
----- 제
한 없-----.

④ ----- 녹음·녹화
·촬영 및 중계방송을하는 ---

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
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
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
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
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

-----.

제81조의2(의정활동 상황의 공개)

① 의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
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
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
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
공개하되, 공개 대상정보는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
의사일정 및 회의록

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
사보고서

3. 행정사무감사·조사계획 및
결과보고서

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
수 및 처리 현황

5. 의원별 회의 출석률, 의원발
의, 군정질문 현황

6.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
개하기로 결정한 사항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

징계대상 의원-----

----- 때는 -----

위원회에 회부 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.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.

----- 회부한다.

② -----

-----.

-- 회부한다.

③ -----
----- 때는 -----
--- 1 이상-----

----- 법 제95
조에 따라 -----

----- 때는 찬
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
며, -----

④ ----- 때
는 -----

⑤ 제1항,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제83조(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
시한)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
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
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
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
게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
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
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
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
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
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.

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
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
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
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
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
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
다. 다만,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
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
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
하여야 한다.

제85조(심문 및 변경) ① (생략)

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
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
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

제83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
시한) ① 제82조제1항, -----

----- 알
게 된 ----- 받은
날 또는 제82조제3항-----
----- 휴
회 기간-----
----- . 제82조제5항의 본회
의 부의 시한 -----.

② 제82조제2항-----
----- 제
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----
----- 날, 징
계대상자----- 알게 된
날로부터 5일 이내-----
-- . --- 폐회 기간중-----
----- 의
회의 집회일-----
-----.

제85조(심문 및 변경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
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
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8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
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
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
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
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
다.

② (생략)

----- 변
명하게 -----.

제8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-

----- 지체 없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